방송통신위원회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2014. 5. 15.(목)

보도자료	2014년 5월 15일(목) 배포 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[의결 안건] 가.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박동주 과장(1460) [보고 사항] 가. 재정팀 고낙준 팀장(1370) 나. 이용자정책총괄과 전영만 과장(1510) 다. 통신시장조사과 장대호 과장(1530)

2014년 제 18차 위원회 결과

□ 오늘 회의에는 **의결 안건 1건, 보고 사항 3건**이 상정되었음

[의결안건]

가.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o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(임기 : 2014. 5. 16. ~ 2016. 5. 15.) 9인을 위촉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함

<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명단 (총 9인) >

구분	분 야	성 명	성별	현 직	비고
위원장	신문방송	김정기	남	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	연임
위원	신문방송	이수영	여	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	
		황용석	남	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	
	법률	황승흠	남	국민대 법학과 교수	
	통계	박민규	남	고려대 통계학과 교수	신임
		오만숙	여	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	
	경제·경영	김동률	남	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	
	기타	이상운	남	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	
		한희정	여	국민대 교양학부 교수	

[보고안건]

가.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'14년도 종편 및 보도 PP의 분담금 징수율 및 징수기준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,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차기회의에서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

나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(첨부 1참조)

o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·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▲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제재권한 일원화(방통위 직접 규제) ▲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」을 보고함

다.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(첨부 2참조)

o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이 '14.10.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▲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 ▲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보고함

<첨부1>

□ 주요내용

1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직접 제재

○ **(사업정지)** 방통위 시정명령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직접 '사업정지'를 명하도록 함

○ **(이행강제금)**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

※ 이행강제금은 사업정지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완화된 대체수단으로 과징금액이 적은 사건 또는 작위명령 위반시 효과적인 제재수단

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】

- **제52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**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등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**제52조의2(금지행위 관련 이행강제금)**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2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

○ **(개정안)** 알선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실질적인 통신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므로 중립성·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

※ '13.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쟁조정·심사 관련 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을 권고(방통위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대상)

※ 행정절차법도 일회적 '청문주재자'라 할지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형법 등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(행정절차법 제28조)

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】

- **제46조(분쟁의 알선)**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 참여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,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<첨부2>

□ 주요내용

1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 (안 제3조)

○ 가입유형,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,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

2 분실·도난 단말장치의 수출방지 (안 제4조)

○ 분실·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

3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(안 제5조)

○ 시장환경,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

※ 긴급중지명령의 세부 적용대상, 세부 적용기간, 불복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

4 자료제출 및 보관 (안 제6조)

○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출고가,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

5 시정명령 관련 기준 (안 제8조~제10조, 별표1)

○ 위반행위의 중지,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공표방법,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규정

6 과징금 관련 기준 (안 제11조~제16조, 별표2)

○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 기준,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, 과징금의 독촉 등을 규정

7 과태료의 부과기준 (안 제18조, 별표3)

○ 대리점, 판매점, 이통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